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제49기 정기주주총회를 정관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7년 3월 24일(금요일) 오전 09시

2.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160, 3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 1) 제1호 의안 : 제49기(2016.1.1.~2016.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결손금처리 계산서포함) 승인의 건
- 2)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4)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5)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에 따라 동법의 종전규정 제314조 ⑤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동봉한 주주총회 참석장과 함께 신분증을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임하실 때에는 주주총회 참석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작성 기명 날인하여 대리인이 접수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6.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7일

코스모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함 재 경 (직인 생략)

※ 제50기 1차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선물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양해바랍니다.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안내문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을 부칙에 따라 동법의 증권규정 제314조 ⑤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 시행령 제317조 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방식으로 (Shadow Voting)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질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부처> (0733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23 한국예탁결제원 권리관리부 FAX. 02-3774-3244~5

<송부시한> 2017년 03월 16일 (※주주총회 5영업일 전)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7년 3월 24일 개최하는 코스모화학(주)의 제49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⑤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2017년 월 일				
실질주주 성 명 :		(인)		
주 소 :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4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5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총에서 활용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3월 14일 ~ 2017년 3월 23일

- 기간 중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부의 안건 참고자료

1. 제49기(2016.01.01~2016.12.31)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대한민국 <u>서울특별시</u> 에 둔다.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대한민국 <u>서울특별시 또는 울산광역시</u> 에 둔다.	본점 소재지 이원화
제28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 그 총회의 종결 시 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단,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경우 그 임기를 3년으로 까지 할 수 있다.	임기 조정
제17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u>서울특별시 전역과 공장 또는 지점소재지</u> 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u>이의 인접지 이외에 울산광역시</u> 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소집지 명문화

3. 제3호 의안 : 이사 후보자의 주요 약력

- 사내이사

구분	성명 (생년월일)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3년간 거래 내역
사내이사	허경수 (57.01.01)	·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 LG전자 이사 · 코스모그룹 회장	이사회	없음	없음
사내이사	함재경 (58.05.24)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LG전자 GMO · 코스모신소재(주) CFO	이사회	없음	없음
사내이사	성준경 (61.01.10)	· 울산대 경영대학원 졸업 · 코스모축매(주) 대표이사 · 코스모화학(주) 대표이사	이사회	없음	없음
사내이사	안성덕 (56.05.30)	· 아주대 공업경영학과 졸업 · LG스포츠 대표이사 · (주)코스모앤컴퍼니 대표이사	이사회	없음	없음

- 사외이사

구분	성명 (생년월일)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 관계	최근3년간 거래 내역
사외 이사	박희갑 (55.02.24)	· 부산대 경영학과 졸업 · LG화학 경영지원담당	이사회	없음	없음
사외 이사	윤기종 (55.03.07)	· 서울대 섬유공학대학원 졸업 ·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이사회	없음	없음
사외 이사	김우열 (56.11.19)	· 동경공업대 전자물리과 박사 · LG Display 일본 연구소소장	이사회	없음	없음

4.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후보자의 주요 약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 관계	사외이사 여부
감사 위원	박희갑 (55.02.24)	· 부산대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LG석유화학 CFO · LG화학 경영지원담당	이사회	없음	사외이사
감사 위원	윤기종 (55.03.07)	· 서울대 섬유공학대학원 졸업 ·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이사회	없음	사외이사
감사 위원	김우열 (56.11.19)	· 고려대 전기공학과 졸업 · 동경공업대학 전자물리과 박사 · LG Display 일본연구소 소장(상무) · 한국철강 에너지사업부 생산/기술 본부장	이사회	없음	사외이사

5.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

구 분	2016년	2017년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8명 (3명)	8명 (3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억원	20억원

※ 이사의 수는 기타비상무이사 1인 포함